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11.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9. 11. 22
- 다. 상 정 일 자 : '99. 11. 22

(제8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노 양 현

나. 개정사유

-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에 부응하고 주민과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코자 함.

다. 주요내용

- 화순군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안 제7조, 8조)
- 판매인 지정신청시 첨부서류인 인감증명, 신원증명, 위치도, 첨부물 폐지 (안 제9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판매인 명의변경 사항신고시 군수 또는 읍면장 승인사항 삭제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증지판매를 원하는 주민과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할때와 판매인으로 지정된 이후에 각종 행정 이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어 행. 재정적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대 되리라 판단됨.

- 그러나 비록 소규모 일지라도 군 수입원의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판매인의 지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할것임.
- 본 개정조례안도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및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부 :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 11.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에 부응하고 주민과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코자 함.

2. 주요골자

- 화순군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안 제7조, 8조)
- 판매인 지정신청시 첨부서류인 인감증명, 신원증명, 위지도, 첨부를 빼지 (안 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판매인 명의변경 사항 신고시 군수 또는 읍면장 승인사항 삭제 (안 제11조)

3. 관련법령 및 근거

-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제7조, 8조 제9조 제11조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2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지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를 지정 신청서로 한다.

제9조2항중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장, 직원복지회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인감계와 판매중사원"을 "판매중사원"으로 하고, "위임장과 위임 받은자의 인감계를"을 "위임장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10일"을 각각 "2일"로 하고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 (판매인 지정) ① (생략)</p> <p>② <u>군수 또는 읍면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u></p>	<p>제7조 (판매인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 제)</p>
<p>제8조 (판매인의 결격 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 2. <u>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u> 3. <u>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u> 4. <u>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u> 	<p>제8조 (삭 제)</p>
<p>제9조 (판매인지정신청) ①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u>지정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u>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②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장, 직원복지회장 (이하 '이사장</p>	<p>제9조 (판매인 지정 신청) ① - - - -</p> <p>- - - - - 지정신청서를 - - - -</p> <p>- - - -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이라 한다) <u>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 하여야 하며</u>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u>위임장과 위임받은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u> 야 한다.</p>	<p>- - - - - <u>판매종사원</u> - - - - - <u>위임장을</u> - - - - - - - - - -</p>
<p>제10조 (판매인의 의무) ① <u>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표찰을 게시 하여야 한다.</u></p>	<p>제10조 (판매인의 의무) ① (<u>삭 제</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 (판매인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 예정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 - - - - - - - - - - - - 2일 - - - - - - - - - - <u>제출 하여야 한다.</u></p>
<p>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p>	<p>② - - - - - - - - - - 2일 - - - - - - - - - - - - - -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u>제출 하여야 한다.</u></p>
<p>제13조 (지정취소) ① (생략) <u>② 지정판매인이 이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미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u></p>	<p>제13조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p>
<p>제15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2 (생략) <u>3.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 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때</u> <u>4.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u></p>	<p>제15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 - - - -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삭제)</p>
<p>제21조 (판매수입금관리) ①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 (이하 '규약'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u>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 ② (생략)</p>	<p>제21조 (판매수입금 관리) - - - - -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p>